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9. 9. 11.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14호

제출연월일 : 2019. 9. 11.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위험구역 설정 · 게시)제4항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 재기재에 해당하고, 준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제7조(위험구역 설정 · 게시)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 제7조제4항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9. 8. 9. ~ 8. 2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충청남도 소관실과 : 사회재난과(041-635-2183)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박 기 연
	안전관리팀장	주 성 철
	담 당 자	임 민 혁 (041-746-642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③ (생 략)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참고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등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참고2 **관련 공문**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279(2019. 5. 31.)호 및 道 교육법무담당관-8109(2019. 6. 4.)호 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인쇄 : 임민혁 / 안전총괄과 (2019-07-12 09:07:01)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

충 청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 현황 조사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279(2019.5.31.), 자치법규과- 795(2019.4.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조실 주관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연내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5월말 기준, 정비실적과 미 정비과제에 대하여 담당부서/ 담당자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2019.6.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제처 협업과제는 제외)
※기재방법 : 반드시 붙임 엑셀 파일 끝부분에 2개의 칸을 만들어 작성

붙임 18년 기획정비 추진현황(시·군·구) 1부. 끝.

충청남도지사인

충 청 남 도 지 사

수신자 천안시장(예산법무과장), 공주시장(기획담당관), 보령시장(기획감사실장), 아산시장(기획예산과장), 서산시장(기획예산담당관), 논산시장(참여예산실장), 계룡시장(정책예산담당관), 당진시장(감사법무담당관), 금산군수(기획감사실장), 부여군수(기획조정실장), 서천군수(기획감사실장), 청양군수(기획감사실장), 홍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군수(총무과장), 태안군수(기획감사실장)

주무관	김경태	법제개혁팀장	진성수	교육협력팀장	대결 2019. 6. 3. 강인복
협조자					

시행 교육법무담당관-8109 (2019. 6. 4.) 접수 참여예산실-5202 (2019. 6. 4.)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교육법무 담당관실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3236 팩스번호 031-635-3038 / ox0111@korea.kr / 부분공개(6)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문서관리카드 참여예산실-5202 1/1